

선 람	기관의 장



제36호(호외) 2021. 9. 14.(화)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1-1748호 광양시 회계관세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광양시 공고 제2021-1749호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

회 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1944, 행정1945)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광 양 시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회계법」 시행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근거법령 대체 (안 제1조)

- 「지방재정법」 제95조를 「지방회계법」 제50조로 대체

○ 근거법령 대체에 따른 용어 추가(안 제2조)

- 「지방재정법」 제91조 삭제, 「지방회계법」 제10조 및 제45조

제정에 따른 용어 추가

- 추가: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 회계관계공무원 겸직 조항 삭제(안 제5조)

- 겸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겸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겸직 조항 삭제

○ 근거법령 대체 (안 제7조)

-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지방회계법」 제49조로 대체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기간 : 2021. 9. 14. ~ 2021. 10. 4.(20일간)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 (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광양시청 회계과(우 57785)

- 전 화: 061-797-2276

- 팩 스: 061-797-2581(팩스 송부 후 전화 요망)

- 전자우편: 1219song@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개정안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재정법」 제95조” 를 “ 「지방회계법」 제50조”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을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 「지방재정법」 제94조” 를 “ 「지방회계법」 제49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를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 ----- -----.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u>통합지출관</u> ,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삭제>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라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 ----- -----

현행	개정안
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u>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u> ③ (생략)	----- ----- ----- -----. ② 제1항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u>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u>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광 양 시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법령 명칭이 변경 됨에 따라, 규칙의 제명 및 조문의 용어를 취지에 맞게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변경에 대한 사항
 -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기간 : 2021. 9. 14. ~ 2021. 10. 4.(20일간)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 (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회계과(우 57785)
- 전 화: 061-797-2276
- 팩 스: 061-797-2581(팩스 송부 후 전화 요망)
- 전자우편: 1219song@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규칙 제5조제2항” 을 “훈령 제5조제1항”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규칙 제21조제1항” 을 “훈령 제21조제1항”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칙 제22조제1항” 을 “훈령 제22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22조제3항” 을 “훈령 제22조제2항”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규칙 제97조” 를 “훈령 제97조”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규칙 제135조제1항” 을 “훈령 제135조제1항”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양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전결처리사항의 공통소관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광양시 간행물발간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 ” 을 제13조 중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으로 한다.

③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 ” 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으로 한다.

④ 광양시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 ” 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으로 한다.

⑤ 광양시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으로 한다.

⑥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 ” 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으로 한다.

⑦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 ” 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으로 한다.

⑧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 ” 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으로 하고 “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 ” 을 “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으로 한다 .

⑨ 광양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 ” 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으로 한다.

⑩ 광양시 도시계획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징수및교부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 ” 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으로 한다.

⑪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징수및교부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 ” 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으로 한다.

⑫ 광양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 ” 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으로 한다.

⑬ 광양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 ” 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으로 한다.

⑭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 ” 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으로 한다.

⑮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 ” 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② (생략)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4에 따른다. ② (생략)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부시장, 국·소장, 실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처리하게 할수 있으며 그 전결 기	<u>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훈령 제5조제1항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훈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 ----- ----- -----

현행	개정안
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생략)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u>규칙</u> 제22조제1항에 따라 회계과장 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한도 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② <u>규칙</u> 제22조제3항에 따라 기획 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하는 범위는 별표7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u>규칙</u> 제97조에 따라 출납원 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 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생략)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u>규칙</u>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 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 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 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u>훈령</u> 제22조제1항에 따라----- ----- -----. ② <u>훈령</u> 제22조제2항에 따라---- -----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u>훈령</u> 제97조에 따라----- ----- -----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u>훈령</u>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7] 예산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재정합의대상 경비 (제6조제2항 관련) <table><tr><th>대상경비</th><th>합의대상 금액</th><th>비고</th></tr><tr><td>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td><td>전액</td><td></td></tr><tr><td>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td><td>전액</td><td></td></tr><tr><td>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td><td>전액</td><td></td></tr><tr><td>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td><td>전액</td><td></td></tr><tr><td>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td><td>전액</td><td></td></tr><tr><td>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td><td>전액</td><td></td></tr><tr><td>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td><td>전액</td><td></td></tr><tr><td>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td><td>전액</td><td></td></tr></table>	대상경비	합의대상 금액	비고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전액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전액		[별표 7] 예산담당부서(기획예산실장) 재정합의대상 경비 (제6조제2항 관련) <table><tr><th>대상경비</th><th>합의대상 금액</th><th>비고</th></tr><tr><td>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td><td>전액</td><td></td></tr><tr><td>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td><td>전액</td><td></td></tr><tr><td>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td><td>전액</td><td></td></tr><tr><td>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td><td>전액</td><td></td></tr><tr><td>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td><td>전액</td><td></td></tr><tr><td>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td><td>전액</td><td></td></tr><tr><td>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td><td>전액</td><td></td></tr><tr><td>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td><td>전액</td><td></td></tr></table>	대상경비	합의대상 금액	비고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전액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전액	
대상경비	합의대상 금액	비고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전액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전액																																																						
대상경비	합의대상 금액	비고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전액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전액																																																						